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윤영희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74
------	------

발의일자 : 2021. 12. 23.

발 의 자 : 윤영희, 김경완,

강수정, 조윤형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과 일부 개정된 내용 반영을 위해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조례 중 「지방자치법」을 단순 인용한 조문이 있거나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

라. 기 타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구”를 “의회”로 한다.

제7조 중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한다.

제8조 중 “구”를 “의회”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43조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의정활동비“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의정활동비“이라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제53조 ~ 제56조”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를 “정례회”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134조”를 “제15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 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법 제127조”를 “법 제142조”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를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30조”로, “담당관&·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146조”를 “「지방자치법」 제163조”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제92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로 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제6조 및 제7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

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7조(「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제62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제71조”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활동기간”을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제3항 중 “활동결과보고서”를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로, “하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제8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 -----.</p>
<p>제2조(의정활동비) ①·② (생략) ③ 의정활동비는 <u>서울특별시금천구(이하 "구"라 한다)</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2조(의정활동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u>----- -----.</p>
<p>제3조(월정수당) ①·② (생략) ③ 월정수당은 <u>구</u>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p>	<p>제3조(월정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의회</u> ----- -----.</p>
<p>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u>별표 5</u>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p>	<p>제7조(여비지급의 기준) ----- ----- ----- <u>별표 6</u> ----- -----.</p>
<p>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등 지급은 <u>구</u> 공무원의 예를 따른</p>	<p>제8조(준용) ----- ----- ----- <u>의회</u> -----</p>

다. ① ~ ② (생략)	--. ① ~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3조(검직신고) ①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②·③ (생략)	제13조(검직신고) ①-----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 ----- ②·③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	제2조(정의) ----- -----

<p>다.</p> <p>1. "직무"라 함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회의원"이라 한다)이 회기(「지방자치법」 제6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된 위원회 포함)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p> <p>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p> <p>3. (생략)</p>	<p>--.</p> <p>1. ----- ----- ----- 「지방자치법」 제70조제1항 ----- ----- ----- ----- ----- -----.</p> <p>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 -----</p> <p>--.</p> <p>3. (현행과 같음)</p>
--	--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4조·제4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제53조 ~ 제56조----- ----- ----- ----- -----.</p>

제3조(회기) (생략)

<신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2. (생략)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4조에 따른 결산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안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회기)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정례회의 집회일) 정례회-----

1. 2. (현행과 같음)

제5조(심의) ① -----

----- 제150조-----

② ----- 법 제49
조제1항-----
----- 법 제142조-----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3. <u>법 제113조부터 제116조</u>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및 소속공무원중 구청의 <u>담당관·과장</u>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p> <p>4. <u>법 제146조</u>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p> <p>5. (생략)</p>	<p>제2조(범위) -----</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u>제130조</u> -----</p> <p>----- <u>담당관·과장</u>-----</p> <p>-----</p> <p>4. 「지방자치법」 제163조-----</p> <p>-----</p> <p>-----</p> <p>5.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부터 <u>제92조</u>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u>제104조</u>-----</p> <p>-----</p>

가. ~ 다. (생략)

<신설>

2. 3. (생략)

③ (생략)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때에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료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의 이의 신청과 제12조의 주민조례 청구 수리 또는 각하에 관한 사항

2.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 설치목적, 위원구성, 활동기간, 활동내용, 소요경비 등----. 다만,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 활동기간,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

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생 략)

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④ 예산안,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⑥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제출안건의 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중 긴급한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0. 19.>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0조(위원회의 개회) ①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

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9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2. 월정수당 :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하되, 심의회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②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는 별표6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9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따른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37조에서 “심의회”라 한다)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금액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6. 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7. 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1. 시·도: 15일 이상

2. 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

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